

# 닭 · 오리 사료 운반차량은 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!

## ■ 사료 제조업체 및 운반차(대리점, 지역·농축협 등)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

- ① 닭과 오리의 사료는 반드시 구분하여 공급하고, 오리사료 운반차량과 닭농장 출입을 금지함
- ② 오리사료는 반드시 전량 지대포장 형태로 공급할 것
- ③ 발코 및 통백형태로 운반할 경우에는 시·도(축산과)에서 '오리사료 전용운반차량'으로 지정 받아야 함
- ④ 돼지사료 발코운반차량으로 오리사료 운반은 가능하나, '오리사료 전용운반차량'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, 닭 및 소 사료의 운반은 금지됨
- ⑤ 사료공장·대리점 농장 출입 때마다 소독 실시
- ⑥ 시·도 발코 지정서를 차량에 비치하고 '전용차량 스티커'를 조수석 전면유리 하단에 부착한 후 운행

## ■ 농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

- ① 사료전용차량지정서, 미소지 및 '전용차량 스티커' 미부착 사료운반차량의 농장출입을 차단할 것
- ② 아울러 지정서 및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시·군 등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
- ③ 지정서 소지 및 스티커 부착차량의 농장 출입시 소독을 실시
- ④ 자가 트랙터·경운기 등 사료 운반수단을 마련하여 농장 또는 마을입구에서 축사까지 사료 직접 운반

## ■ 운반업체 및 운반차 준수사항

- ① 시·도(시·군) 축산과에 소속, 차량번호, 운전자·성명 등을 신고하고 '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'으로 지정 받은 후 운행

- ② 닭 운반차는 시·도로부터 지정종인은 불필요하나, 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
- ③ 어떠한 경우에도 닭 운반차량의 오리운반과 오리 운반차량의 닭 운반을 금지함
- ④ 차량에 시·도 발코 전용차량 지정서를 비치하고 전면유리 조수석 하단에 '전용 운반차량 스티커' 부착 후 운행
- ⑤ 농가 도착시 '전용차량 지정서'를 제시하고 출입시 소독 실시
- ⑥ 운반차는 상차 등을 이유로 축사내부에 들어가지 말 것
- ⑦ 도입(계장 도착시 '전용차량 지정서'를 제시하고 출입시 소독 실시

## ■ 닭·오리 농가 준수사항

- ① 전용차량 지정서와 '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'를 확인(닭 농가는 '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'만 확인)
- ② 지정서(오리) 및 전용운반차량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농장진입을 차단하고 시·군 등 방역당국에 신고
- ③ 운반차량은 반드시 소독실시 후 출입을 허용하되, 운반차의 축사내부 출입을 금지할 것
- ④ 농장 자체 운반시 시(도·시·군)에 신고 후 차량에 스티커 부착

## ■ 닭·오리 도축장(방역관 또는 자체감사원) 준수사항

- ① 출하차량 도착시 전용 운반차량 여부 확인 후 진입 허용
- ② 운반차량 출입시 소독실시 여부 지도·감독 철저
- ③ 미지정 차량의 오리운반 적발시 시·군 등 방역당국에 통보